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054
----------	------

2019년 12월 17일  
교육위원회

##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년 10월 15일, 양민규 의원
2. 회부일자 : 2019년 10월 22일
3. 상정일자

○ 제29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0차 교육위원회

(2019년 12월 17일 상정, 원안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양민규 의원)

###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

###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임무 및 임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8조).

○ 위원회의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19년 10월 15일 양민규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1054호로 발의되어 2019년 10월 2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습니다.

#### 2. 주요 검토의견

##### 가. 조례 제정의 배경과 취지에 대한 의견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1)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 그리고 이러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는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 이사회의 심의만을 거친 채 서울시의회에 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절차상의 흠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표-1]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심의절차



- 이런 점에서 동 조례안은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기금법상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의무 위반사항을 해소하고,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됩니다.<sup>2)</sup>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현재까지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정” 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 1개임.

## 나. 주요 조문별 검토

### 1) 조례안의 구성

- 동 조례안은 총 1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 정의에 관한 총칙 규정을, 안 제3부터 제10조까지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임기, 간사, 수당 등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본칙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자치법규 입안실무」 및 「법령입안 심사기준」 등에 부합하도록 체계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2) 위원의 구성에 대한 의견(안 제5조)

- 안 제5조는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민간위원의 경우 그 위촉 조건으로 기금운용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거나 관련 분야 전문가로 한정하고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기금운용 분야에서의 활동 경력 중 3년 이상이라는 기간 제한을 삭제해줄 것을 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7407, 2019.11.18.).
- 이와 관련하여 기금운용심의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관련 분야 전문가로 인정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단순히 기금운용 분야에서 활동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활동 경력으로 3년이라는 기간 제한을 두는 것은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현재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경우 민간위원의 위촉 조건이 기금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sup>3)</sup>

3)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이미 서울시교육청에 설치된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경우에도 동 조례안과 같이 민간위원은 기금운용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로 규정·운용되고 있는바,<sup>4)</sup>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용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로 달리 규정·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수정에 대한 의견(안 제6조 및 제8조)

○ 그 밖에 서울시교육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동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1회에 한하여”는 “한 차례만”으로, “위원의 위촉 해지”는 “위원의 해촉”으로 일부 용어의 수정을 요구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동 조례안 제8조의 조문 “위원의 위촉 해지”는 법제처에서 최근까지 “위원의 해촉”을 “위원의 위촉 해지”로 순화하여 사용할 것을 권고한 사항이었으나, 최근에 다시 변경되어 기존의 “해촉”은 그대로 “해촉”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재권고한 것으로,<sup>5)</sup>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은 “여기서 제시한 순화용어가 모두 적절하지 않으면 새로운 다른 순화용어를 찾아서 바꾸거나 현행

---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기금의 합리적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2. 정부출연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변호사 및 금융 업무에 관한 전문가

4. 그 밖에 교육감이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

2. 당연직 위원은 총무과장, 예산담당관, 교육재정과장으로 한다.

3. 민간위원은 기금운용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거나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5) “중전에는 해촉을 위촉 해제로 썼으나, 위촉 해제도 어렵고 해촉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해촉을 사용하기로 함.”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제8판), 2017년 12월, 247p).

그대로 쓸 수 있도록” 조례 제정에 있어서의 용어 사용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제8판), 2017년 12월, 188p).

- 따라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이 권고사항에 불과하다는 점, 그리고 동 정비기준에 제시한 순화용어도 수시로 변경된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동 조례안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여도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설치·구성된 기금을 말한다.

제3조(설치)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성과분석
4. 그 밖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하고,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민간위원은 기금운용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거나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중에 교육감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운영 등) ① 위원장은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지) ①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특별한 사유가 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할 때



3.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때

4.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안전공제회 업무 담당 사무관이 한다.

제10조(수당)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